I. 序論

21세기는 전세계적으로 老齡化라는 현상이 야기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老齡人口의 所得維持와 健康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活力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야기한다. 이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으며, 中國과 같은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世界的인 趨勢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老齡化에 따른 문제해결의 중심과제는 노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시키면서 經濟成長과 調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高度成長을 기반으로 公的 社會保障 시스템에 의거해서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社會的 貧困問題를 해결해왔으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침체가 연속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경쟁의 글로벌화에 따라 그러한 福祉供給方式을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가나 사회적 연대에 의한 방식보다는 개인의 自助努力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찍이 英國에서 시작되었고, 美國과 日本은 물론 스웨덴과 같은 北歐圈 國家조차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 움직임은 1980년대 초에 칠레에서 행해진 年金民營化를 비롯한 사회보장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면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개혁은 단순히 經濟的 論理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政治·社會的 傳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때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公的福祉의 공급수준이 낮다

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特殊職域年金을 제외한 國民年金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年金改革을 논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라는 일부의 지적도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超長期에 걸쳐서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旣得權을 갖는 계층이 생겨나 개혁이 어렵게 된다. 즉,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제도개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단계인 현단계에서 초장기적 비젼 하에 연금시스템을 再構築하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으며, 민영연금으로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1996년 勞使改革委員會의 합의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福祉擴充을 둘러싸고 개인, 기업, 국가간 役割分擔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현행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당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현행 공적연금시스템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人口學的 變動要因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향후 2020년대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國民年金基金 赤字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공급방식이 個人主義 趨勢의 확산, 니드의 다양화 등과 같은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 국민연금은 老後所得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그에 따라 공적연금과 민영연금간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

되어야 할 것인가?

따라서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公的年金을 어떻게 적절히 개선하는가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낮추고 民營年金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본 고는 退職年金制度의 도입을 계기로 老齡化와 雇傭慣行 變化에 따른 소득보장 유지를 위해 공사연금간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要因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類型別로 정리하고, 연금개혁이 어떠한 經濟的 效果를 낳을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제Ⅳ장에서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민영보험의 역할확대방안과 공사연금제도간 調整方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제시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설정하고 그러한 시스템 하에 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공사연금 규모에 대한 長期展望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민영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保險會社의 對應課題를 제시하기로 한다.